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- 347호

#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공동효과형) 시행계획 공고

『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공동효과형R&D』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5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#### - 유의사항 -

- 1. 본 사업의 과제는 1개 기술제안서(RFP, 총괄과제 단위)당 2~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2.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추가(수정)제출이 불가하오니,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3. 신청·접수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하며, 신청 마감일 마감 시간(18시) 내 신청·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\* [붙임1~2]의 세부 지원내용 및 세부 신청자격 확인 필요

## 1. 사업 소개

- □ 본 사업은 동일업종 기업들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산업계 공통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성이 높고 파급력이 큰 기술개발 분야를 집중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□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과제 중심에서 벗어나 다자간 협업방식의 컨소시엄 단위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

## 2. 주요 변경 또는 개선 사항

구 분		시행 계획 변경 사항		
		'24년도	'25년도	
중기부 R&D 공통	졸업제	<ul> <li>졸업제 대상사업 확대(중기 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 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)</li> <li>20년도부터 졸업제 사업을 3회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불가</li> <li>단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 제 수 산정 기준은 붙암 참고</li> </ul>	• 해당없음	
	동시수행 과제수 제한	• 해당없음	(동시수행)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1개 까지만 가능(졸업제 예외사업까지 최대 2개까지 가능)     * 수행중인과제수산정은 '25년 협약 과제부터 절용'	
	보안과제 자체 점검	• 해당없음	• (보안등급분류) 연구개발기관에서 신청하고자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여부를 자체 점검 후 신청(팔수) * 세부대용은 [붙임] 참조	

# 3. `25년 지원내용

- □ (사업목적) 산업계 공통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성이 높고 파급력이 큰 기술개발 분야 집중발굴·R&D 지원
- □ (지원규모) 23.7억원 내외 (약 8개 컨소시엄, 25개 세부과제)
  - 지원조건: 세부과제별 최대 2년 6억원, 연구개발비 최대 75% 지원

내역 사업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*	지원방식
시장확대형 (공동효과형)	최대 2년, 6억 이내 (연차별 최대 3억 이내)	75% 이내	지정공모

\*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,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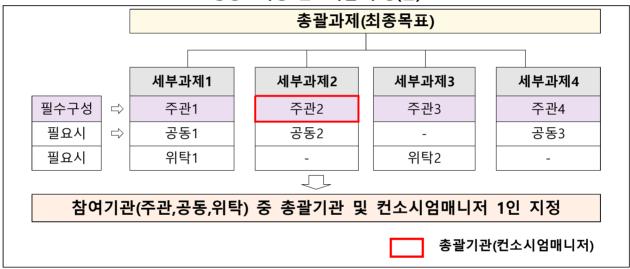
- □ (지원대상) 중소기업\*, 중소기업협동조합\*\*
  - \*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
  - \*\*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1항 3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가능

## □ (지원방식) 지정공모

○ 산업계의 공통 수요를 통해 발굴한 아래 RFP 중 우수 컨소시엄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예정(RFP 상세내역은 [붙임3]을 통해 확인)

#### 4. 신청자격 등 유의사항

< 공동효과형 컨소시엄 구성(안) >



## □ 신청자격

- o (주관 및 공동)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  - \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3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가능
- (주관연구개발기관) 공통수요가 있는 기술개발·운용 가능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
  - \* 기술혁신R&D 공통 적용 사항인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미적용
- (공동연구개발기관)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
- (위탁연구개발기관)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
  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학,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

#### □ 컨소시엄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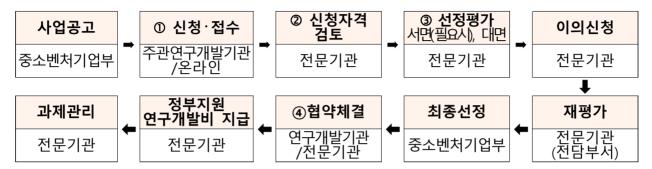
- (주관연구개발기관) 1개 컨소시엄 내 최대 1개 세부과제 참여 가능
- (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) 참여 세부과제 수 제한 없음
  - \* (공통) 졸업제 및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, 3책5공 등 공통 관리지침을 따름. [붙임1] 참고
- (총괄기관 및 컨소시엄 매니저)
  - 세부과제 간 기술검증·연계 등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및 신청 시 총괄기관과 컨소시엄 매니저 **필수 지정** 필요
  - 총괄기관은 참여기관 중 1개 기관으로 지정하며, 컨소시엄 매니저는 총괄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 지정
  - 컨소시엄 매니저는 신청·접수 시 대표로 총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.
  - \* 총괄기관(컨소시엄매니저)의 세부과제 관리 계획, 방안등을 포함하여 서술
- □ (신청자격의 검토·확인) 참여제한, 의무사항 불이행, 부채비율,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  - \* 신청자격 검토(확인) 결과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(협약체결 여부)와 관계없이 지원제외(협약해약)로 처리
  -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·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 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,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□ (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) 신청·지원제외 세부사항은 [붙임1] 참고
- □ (3책5공 제도 적용)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
  -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,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
    - \* (3책공 제도)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85조제)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(항) 다만,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(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가관(연구개발 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가관으로 한정한다)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 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가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

- □ (보안등급 분류)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 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
  -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과제/일반과제)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    - 보안과제는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
    -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,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(보안과제 ↔ 일반과제)
  -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1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44조부터 제48조,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」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
    - \* 신청과제의 보안등급(보안과제/일반과제)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
  -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[붙임1-1] 참고

#### 5. 평가절차 및 기준

#### □ 평가절차

- ☞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- ☞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



- \*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
- \*\*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,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

#### □ 평가기준

평가항목		세부항목	
	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	· 기술개발 목표, 내용의 수준, 구체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	10
기 술 성	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	· 기술개발 목표(예비연구, 사업화 R&D, 실증 등 단계별 목표) 및 개발방법, 개발기간,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	15
	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	· R&D의 기술적 파급효과	5
사 업 성	사업화 계획의 가능성	· 구체적인 사압화 목표와 전략, 방법, 일정,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	10
	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	· R&D의 경제적 파급효과(타겟 시장/제품의 성장 가능성 등)	10
	공통기술 확산 가능성	· 산업계 공통기술 해결, 확산, 운용 가능성	10
기술개발 보유역량	연구개발역량	· 과제 수행 관련 특허, 논문 등 기술적 기반 · 연구자의 과제수행 역량 · 시설·장비 등 연구 인프라	10
수준	연구윤리	· 연구개발비 부정사용,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	10
컨소시엄 타당성	추진체계 타당성	· 컨소시엄 추진체계의 타당성	10
	역할 구성	·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역할의 적정성	10

□ 가·감점 : [붙임2] 참고

#### 6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□ 연구개발계획서 신청·접수기간
  - ☞ 접수창구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→ 사업정보 → 사업공지 → 사업공고
  - 과제 신청·접수기간 : '25. 6. 16(월). ~'25. 6. 30(월).

#### <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>

- ☞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
- ☞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~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
- ☞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·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\* 18시 이후, 신청 및 제출,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
- ☞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:00 까지만 가능
- □ 신청방법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활용
  - 컨소시엄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신청·접수
    - RFP내 컨소시엄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세부 과제의 일부가 신청· 접수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됨
  - ◇ 신청방법: www.iris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\* → QUICK LINK → R&D업무포털 → 과제접수 → 신청공고 목록에서 '공동효과형R&D' 검색 후 시스템 내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
    - \*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이 필요하며, 기관대표자 및 과제참여자는 '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-연구자정보 전환동의'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
  - ◇ 신청서류 :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공고 및 양식 확인
    - www.iris.go.kr → 사업정보 → 사업공지 → 사업공고 → 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 공동효과형 시행계획 공고 → 세부과제별 맞는 RFP를 목록에서 선택 후 신청
  - ◇ 온라인 시스템 작성 후 '최종확인'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 → 오류 발생시 해당 안내에 따라 수정가능하며, 이후 '최종확인' → '제출'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(제출 이후 수정 삭제 불가)

연구(책임)자가 IRIS 기관등록, NRI 가입, 온라인 입력정보 기관총괄담당자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전환 동의 작성 및 계획서, 신청(기관담당자 온라인 등록사항 연구과제 및 정보 제출서류 등 최종 확인 · 승인 권한 부여), 신청완료 등록.갱신 등록 기관대표자 등록 등 (학력, 경력 등)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

## 7. 기술료 징수기준

#### □ R&D 기술료 징수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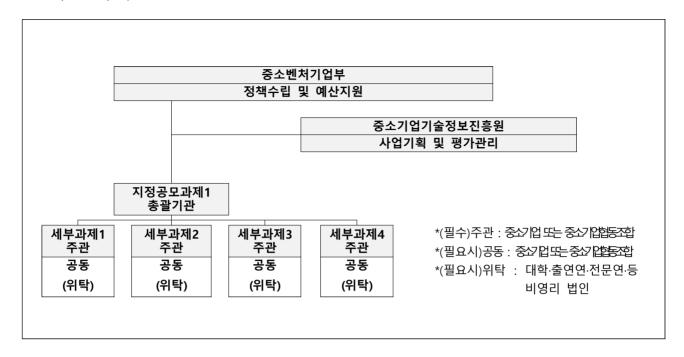
- o (납부대상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
- (납부방식)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, 세부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 혁신법」및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에 따라 징수
- ☞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
-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(사업화)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(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)의 일정비율로 납부
-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, 총매출액에 중소 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,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
  - \* 시스템사용: www.iris.go.kr >>알림고객>>자료실>>IRIS사용메뉴얼>>온라인메뉴얼>>"기술료" 검색>>R&D업무포털 "사후관리(기술료)메뉴얼" 참고
  - \* 법령확인: www.iris.go.kr >>알림고객>>자료실>>국가R&D법령.지침>>"중소벤처기업부", "기술료" 검색>> "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" 참고

## 8.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

## 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관련 행정규칙,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
-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-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
-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
-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
-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
  - \*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

## □ 추진체계



#### 9. 문의처

## □ 사업안내

	담당기관(부서)	문의사항	전 화
사업총괄	중소벤처기업부 (기술개발과)	시행계획 공고	중소기업 통합콜센터
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전략협력사업실)	신청·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선정평가, 유의사항 등	(국번없이) 1357
시스템	IRIS 운영단	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신청・접수,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	IRIS 콜센터 (국번없이) 1877-2041

#### ☞ 관련 웹사이트

-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: http://www.mss.go.kr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: http://www.iris.go.kr
-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: "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" / http://pf.kakao.com/\_llfqd

[붙임1]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

[붙임1-1]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

[붙임2] 제출서류 및 세부 지원내용

[붙임3] 공동효과형 RFP 목록